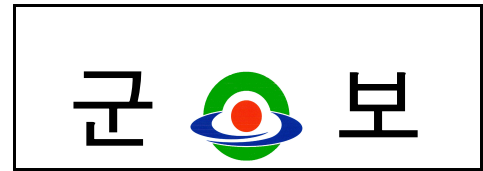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51호 2019. 3. 4.(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9-284호)
-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289호)
-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 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30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개각)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및 신조 사유 : 공인 마모로 인한 개각 및 공인 미사용
2. 폐기 및 신조 개시일 : 2019년 3월 4일
3. 폐기 및 신조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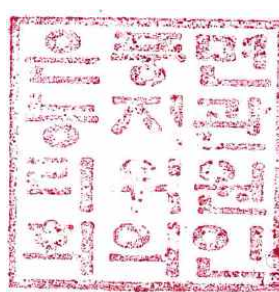
2019년 3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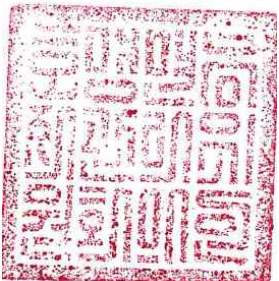
예 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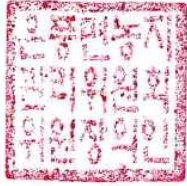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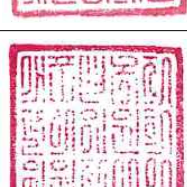
폐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예천군신청사건립 기금운용관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예천군보건소일상 경비출납원	전서체 1.8cm×1.8cm		
폐기	민원실유천면장의 인전용	전서체 2.1cm×2.1cm		
폐기	유천면국민저축조 합장직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민원실용궁면장 의인전용	훈민정음체 2.0cm×2.0cm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예천군용궁면계 인	훈민정음체 3.0cm×1.3cm		
폐기	예천읍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용문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효자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은풍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감천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보문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호명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유천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용궁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개포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지보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풍양면농지관리위 원회의인	전서체 3.5cm×3.5cm		
폐기	예천읍농지관리위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용문면농지관리위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효자면농지관리위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은풍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감천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보문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호명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유천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용궁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개포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지보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풍양면농지관리위원회 원회위원장의인	전서체 2.0cm×2.0cm		
폐기	민원실개포면장 의인전용	전서체 2.1cm×2.1cm		
폐기	개포면계인	전서체 2.1cm×1.0cm		

신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용문면장인	훈민정음체 2.1cm×2.1cm		
신조	민원실용궁면장 의인전용	훈민정음체 2.1cm×2.1cm		
신조	예천군용궁면 계인	훈민정음체 3.0cm×1.3cm		
신조	민원실유천면장 의인전용	훈민정음체 2.1cm×2.1cm		
신조	민원실개포면장 의인전용	훈민정음체 2.1cm×2.1cm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개포면계인	훈민정음체 3.0cm×1.3cm		
신조	민원실호명면장 의인전용	훈민정음체 2.1cm×2.1cm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예 천 군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표준안)」에 맞게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 통제함으로써 공무 국외여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의 제한 (안 제3조의1 신설)

- 공무 국외여행의 허가 제한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무 국외여행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 근무경력, 업무관련성, 징계여부, 경과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제한

나.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 추가 (안 제12조)

- 공무 국외여행 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대처

다. 공무 국외여행 허가대장 관리 (안 제16조)

- 허가 관리대장 작성·관리를 통한 사후 관리 철저

3. 개정규정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paissue08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총무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086, 팩스 : 054-650-6089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실 근무경력 3년 이내인 사람(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3. 최근 3년 이내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음주운전, 도박 등)로 징계를 받은 사람
4. 최근 공무 국외여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단, 학회, 협회 등에 주 제발표자로 참가할 경우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교육대상자, 포상유공자 등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퇴며, 부위원장”을 “퇴고, 부위원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퇴며, 간사는 총무업무담당 주사가”를 “퇴고, 간사는 총무팀장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여부

가.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나.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다.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총무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1(허가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u> <u>1. 실 근무경력 3년 이내인 사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u> <u>2.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u> <u>3. 최근 3년 이내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음주운전, 도박 등)로 징계를 받은 사람</u> <u>4. 최근 공무 국외여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단, 학회, 협회 등에 주체발표자로 참가할 경우 제외)</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교육대상자, 포상유공자 등은 예외로 한다.</u>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되고, 부위원장----- ----- 주민복지실장 ----- 되고, 간사는 총무팀장이 -----.

만 공무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
서 제외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여
행허가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6조(사후관리)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제12조(심사기준) ① -----
----- 각 호와
-----.

1. ~ 9. (현행과 같음)

10.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
치 적정성 여부

가.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
병 발생 여부

나.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항
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다.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
락체계 수립 여부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여행
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
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
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 허가 관
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입법예고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예 천 군



1. 제정 이유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예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상영 시에 관람료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공연 관람료 책정

- 영 화 : 1,000원 (감면 없음)
- 공 연 : 기획공연료에 따라 차등

(단위 : 원)

기획공연료 기준	관 랑 료		비 고
	일반권	할인권	
3천만원 이하	3,000	2,000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5,000	3,000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000	5,000	
5천만원 초과	10,000	8,000	

※ 할인권 대상 :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 다자녀가정, 20인 이상 단체 등

나. 공연 무료관람 대상

○ 국가유공자, 1~ 3급 장애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공연 관람료 할인대상

○ 어린이 및 청소년, 65세 이상 경로자, 20인 이상 단체, 다자녀가정 등

3. 제정지침안

○ 불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체육사업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청소년수련관(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

- 전 화 : 054-650-6424 - 팩 스 : 054-650-642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ycg.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지참명 :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지참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예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영 화 : 1,000원 (감면 없음)
2. 공 연

(단위 : 원)

기획공연료 기준	관람료		비고
	일반권	할인권	
3천만원 이하	3,000	2,000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5,000	3,000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000	5,000	
5천만원 초과	10,000	8,000	

※ 할인권 대상 :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 다자녀가정, 20인 이상 단체 등

제3조(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① 관람권 판매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예매 및 현장판매를 병행한다.

②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대표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③ 출납공무원은 매일의 관람권 판매현황을 별지 제1호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의한 발권인 경우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수입관리) 관람료 수입금은 예천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납부한다.

제5조(무료 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공연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예천군이 문화 소외계층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관람료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공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1. 어린이(만 4세 이상 ~ 만 13세 미만)
2. 청소년 (만 13세 이상 ~ 만 18세 미만)
3.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4. 다자녀가정
5. 20인 이상 단체

제7조(관람취소 등) 공연 또는 영화 관람을 위하여 예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관람이 어려운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한다.

1. 관람일 8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환급
2. 관람일 7일전~4일전까지 취소 시 예매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 관람일 3일전~2일전까지 취소 시 예매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4. 관람일 1일전까지 취소 시 예매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5. 당일관람 예매권은 환급 불가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관람권 판매 일일결산 보고서

공연명 :

20 년 월 일 ()

결 재	담당자	팀 장	소 장

구 분		일 계					누 계					비 고
		일련 번호	매수	인원	입장료	총액	일련 번호	매수	인원	입장료	총액	
개 인	일반권											
	할인권											
	무 료											
단 체	일반권											
	할인권											
	무 료											
총 계												

※ 영화 관람권 판매의 경우 개인 일반권 칸에 작성.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관람료) ① 문화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 허가 신청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하고 매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화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각한다.

⑤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